

의안번호	2216861
의 퇴 인	이용우의원
회 답 일	2026.3.6.
추 계 번호	26B0897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18753호 부칙 제2조(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)	제36조제1항 및 제3장의3(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함(제1항)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제112조에 따르도록 하며,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함(제2항) 1. 요양급여: 건강손상자녀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. 이 경우 여러 차례의 요양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요양에 대하여 시효를 각기 기산함 2. 장해급여: 18세가 되는 날의 다음 날. 다만, 건강손상자녀의 요양이 18세 이후에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함 3. 간병급여: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 날. 이 경우 여러 차례의 간병을 행한 날에는 각각의 간병에 대하여 시효를 각기 기산함 4. 직업재활급여: 다음 각 목의 날 가. 제72조제1항제1호의 급여: 건강손상자녀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(직업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그 기간)의 다음 날 나. 제72조제1항제2호의 급여: 건강손상자녀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법률 제18753호 부칙 제2조(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□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,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·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,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자녀(이하 ‘건강손상자녀’)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음¹⁾

- 법률 제18753호 부칙 제2조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(이하 “산재보험”)을 법 시행일(2023.1.12.)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되^①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경우, ^②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지급권을 인정받은 경우, ^③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했지만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(급여) 요양급여, 장애급여, 간병급여,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
 - (수급권) 자녀에게 수급권을 인정하되, 장례비는 유족에게 인정

[표]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 현황 및 급여 지급 실적

(단위: 건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신청	4	—	—	1	7	3
승인	4	—	—	1	3	2

주: (작성기준) 근로복지공단 1회차 처리일 기준

자료: 고용노동부

- 개정안은 법률 제18753호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출생일 제한 및 소급 적용 제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, 최초 요양일²⁾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청구의

1) 제91조의12(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)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·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,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,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(이하 “건강손상자녀”라 한다)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.

2) 개정안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급여 관련 기산일은 다음과 같음

1. 요양급여: 건강손상자녀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. 이 경우 여러 차례의 요양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요양에 대하여 시효를 각기 기산한다.
2. 장애급여: 18세가 되는 날의 다음 날. 다만, 건강손상자녀의 요양이 18세 이후에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.
3. 간병급여: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 날. 이 경우 여러 차례의 간병을 행한 날에는 각각의 간병에 대하여 시효를 각기 기산한다.
4. 직업재활급여: 다음 각 목의 날
 - 가. 제72조제1항제1호의 급여: 건강손상자녀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(직업훈련

소멸시효³⁾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여 산재보험 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건강손상자녀 산업재해에 대한 규정 변경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

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그 기간)의 다음 날
나. 제72조제1항제2호의 급여: 건강손상자녀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
이 지난 날의 다음 날

3) 제112조(시효)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. 다만,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장례비,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